

2016. 10.

『전주비빔밥 상표 사용권』 계 약 서

전 주 시

상표권 사용계약서

상표권자 전주시(이하 “갑”이라 한다)와(과) 사용권자 한우물영농조합법인(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이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상표의 사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제3조에 기재된 갑의 상표권에 관하여 을에게 비독점적 사용권을 부여하고, 을이 로열티를 지급함에 있어 당사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되는 아래의 용어는 각각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1. 계약 상표 : 갑이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표로서 을에게 비독점적 사용권을 설정하는 상표를 의미한다.
2. 계약품 : 계약 상표를 표시·부착하게 될 제품을 의미한다.

제3조(상표권의 표시) 계약 상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표등록번호	지정상품(제30류)	상표
제0007000호	가공비빔밥, 콩나물을 부재료로 하는 가공비빔밥, 가공 도시락 비빔밥, 각종 곡물로 가공된 비빔밥, 육회가 첨가된 가공비빔밥.	

제4조(사용권의 범위) 본 건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표의 사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용기간 : 계약상표에 대한 을의 사용권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0년간) 존속한다. 2016년 10월 12일부터 2026년 9월 11일까지
을이 계약연장을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1)개월 이전에 계약기간 연장 의사를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계약만료일 전에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을이 정해진 기간에 계약기간 연장 의사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써 본 계약은 확정적으로 종료된다.
2. 사용권의 종류 : 통상사용권(상표법 제57조)
3. 사용지역 : 국내·외 전역
4. 계약품 : 전주비빔밥 지정 상품 30류

제5조(계약조건) 계약체결 조건은 다음과 같다

- 가. 국가·지방 기능보유 인증자 등 식품관련 자격을 가진자가 상시 조리할 것.
- 나. 전주비빔밥 재료 : 콩나물, 참기름, 고추장, 밥, 고사리, 표고버섯, 호박 및 미나리, 도라지 등과 황포묵 또는 청포묵
다. 을은 전주시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고, 협의하여 진행한다. 다만, 전주시 재료를 수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도내 및 국내제품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라. 전주비빔밥에 대한 세계화 및 명품화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① 을은 계약상표 사용에 대한 대가로 갑에게 다음과 같은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1. 선금금 : 금 5천 만원을 지급한다. 본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 지급한다.
2. 월사용료 : 계약품의 제조·판매로 발생된 완제품 또는 원재료별 개별

제품에 대한 사용료로는 현 갑의 조례상 공장도판매가(출고가)의 1,000분의 3의 사용료를 납부한다. 단, 조례개정 후에는 사용기간 중에 개정된 조례에 따라 월 사용료를 정한 후 납부한다.

3. 사용료 납입은 익월 15일까지 납입고지서에 의거 시금고 등에 입금 하며, 15일이 공휴일, 일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입금한다.
4. 을이 월 사용료를 기간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체일수에 그 당시의 갑의 주거래 금융기관(전북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또는 대출금리)를 적용한 지체상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의 반환청구 금지) 을은 계약기간 중에 을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상표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8조(상표의 사용법) ① 을이 계약품에 계약상표를 사용할 때는 형태 및 색채를 포함해 갑이 사전에 승인한 방법대로 등록된 상표대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계약품에 추가로 “전주비빔밥”이라는 문자를 부착하여 사용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을은 갑의 사전승인 없이는 전항의 사용방법을 변경하지 못하며, 계약상 표외에 다른 어떠한 문자, 명칭, 상표, 포장 또는 기타 표시도 결합하지 않는다.

③ 상표는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면적은 인쇄면적의 10%이상 범위로 표기하여야 한다.

제9조 (계약품의 견본제출) 을은 계약품의 판매 전에 스스로의 비용으로 계약품의 각 모델에 대한 견본을 갑에게 송부하여 갑의 서면 승인을 얻은 후 계약품을 판매해야 한다. 다만, 갑이 그 견본을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을에게 판매를 중지하라는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을은 계약품의 판매를 개시할 수 있다.

제10조(포장 등의 견본제출) 포장, 용기, 라벨 혹은 광고 및 판촉자료에 계약상표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을은 포장 등의 견본을 먼저 갑에게 제출해야 하고 포장 등의 사용에 앞서 갑의 서면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상표관리) 상표는 제품 포장지에 부착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고 훼손 및 분실 시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상 하여야 하며, 계약 해지 시에는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유사상표 출원금지) 을은 계약상표에 대하여 전체나 그 일부 혹은 계약상표와 유사한 기타 상표의 등록 출원을 하지 않고 또한 출원하게 하지 않는다.

제13조(사용권의 양도 등) 갑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을은 본 건 상표권 및 제조방법에 대한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재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제14조(계약의 해지 등)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시에는 갑은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 한다. 이 경우 손해배상금은 1항에서 3항까지로 한다.

① 제5조의 계약조건 위반 및 제8조에 해당하는 상표사용 위반시

② 을이 본조 이외의 본 계약을 위반하여 그 시정을 최고 받은 후 14일 이내까지도 시정이 없는 경우

③ 을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하여 전주시 전통음식 등에 대한 명품화 및 세계화에 지장을 초래하여 갑의 명예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

④ 을이 자진폐업 및 조업을 중단하여 상당기간 동안 조업이 제기될 가능성이 없거나 해산·청산·파산·지급불능·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본 계약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이 경우 을은 **선급금을 포함하여 갑에게 이미 지급한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15조(손해배상) "을"이 귀책사유에 의하여 본 계약의 각 조항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의무 이행을 지체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하며, 제14조 및 을이 계약 성립 후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변경·해지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을은 즉시 손해를 배상한다. 이 경우 손해배상금은 상기제품 **월 평균 1회에 해당하는 공장도 판매가(출고가) 금액으로 정한다.**

제16조(관련서류제출) "을"은 매월 판매생산량 및 개별제품 공장도 판매가액에 대한 관계 자료를 익월 15일까지 "갑"에게 제출(FAX 제출가능)하여야 하며 "갑"이 관계 자료를 열람 또는 요구 시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계약의 수정) 본 계약은 쌍방의 권한 있는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에 의하여 수정되지 않는 한 수정·보정·정정될 수 없다.

제18조(중도해지)

갑과 을은 본 계약을 중도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2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기타) 이 계약 이외의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 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6년 10월 일

상표권자(갑)

주소 :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서노송동)

상 호 : 전 주 시 장 김 승 수 (인)

통상사용권자(을)

주소 : 전북 김제시 용지면 백자 1길 112

상 호 : 한우물영농조합법인

성명 : 대표이사 최 정 운 (인)

